의안번호	제 60 호
의 결 연 월 일	2022년 9월 일 (제 403 회)

충청북도교육청 취업역량강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 의 자	이욱희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22년 9월 7일

충청북도교육청 취업역량강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욱희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0

발의연월일: 2022년 9월 7일

발 의 자: 이욱희, 김현문, 이정범, 박병천, 박용규, 박재주, 유상용

1. 제안 이유

본 조례안은 충북 직업계고 학생의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직무능력과 취업역량강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 육성과 직업계고 학생의 취업률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교육감 및 학교장의 책무(안 제3조)

다. 기본계획 수립(안 제4조)

라. 지원 대상 및 사업(안 제5조)

마. 지원방법(안 제6조)

바. 환수(안 제7조)

사. 평가(안 제8조)

아. 협력체계(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

나. 비용추계: 붙임

다. 관계부서 협의: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국 미래인재과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교육청 취업역량강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내 직업계고등학교 학생의 취업역량강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직무역량을 갖춘 인재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업계고등학교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 제10호와 제91조에 따른 고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2. “취업역량강화 지원”이란 직업계고등학교 학생의 취업 또는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 및 태도를 습득·향상시키는 지원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은 직업계고등학교 학생의 취업역량강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취업역량강화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시행이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취업역량강화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취업역량강화 지원 사업 추진 목표 및 방향

2. 취업역량강화 지원 대상 선정
3. 취업역량강화 지원 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성과평가
4. 취업역량강화 지원 재원확보 및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취업역량강화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 대상 및 사업 등) ① 교육감은 제2조제1호의 학생에게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취업역량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전공 분야 취업을 위한 자격증 취득 지원
2. 외국어능력시험 지원
3. 직업기초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지원
4. 그 밖에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교육감은 지원 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거나 다른 기관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차등하여 지원하거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조(지원방법) ① 교육감은 취업역량강화 지원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학교장에게 교부하여 집행한다. 다만 현물지원 등 다른 방법으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집행 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취업역량강화 지원이 필요한 대상학생에게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 할 수 있다.

③ 취업역량강화 지원방법 및 절차, 금액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7조(환수) 교육감은 취업역량강화 지원 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취업역량강화 지원 예산을 지원받았거나, 지원받은 비용을 제5조 제2항에서 규정한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원 받은 전액을 환수해야 한다.

제8조(평가) 교육감은 해당 연도의 취업역량강화 지원 사업 운영 성과에 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다음 연도 취업역량강화 지원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취업역량강화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산업체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 2022. 2. 18.] [법률 제18425호, 2021. 8. 17.,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2. 3., 2021. 3. 23., 2021. 8. 17.>

1. “직업교육훈련”이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및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학생과 근로자 등에게 취업 또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 및 태도를 습득·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교육 및 직업훈련을 말한다.
2. “직업교육훈련기관”이란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시설을 말한다.
3. “직업교육훈련생”이란 직업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 또는 받으려는 사람을 말한다.
4. “직업교육훈련교원”이란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직업교육훈련생을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산학협동”이란 직업교육훈련기관과 산업체(산업체단체 및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산업인력의 양성과 산업기술의 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는 활동을 말한다.
   가. 인력·시설·설비와 직업교육훈련 정보의 공동활용 및 협동연구
   나. 특약에 의한 학과 또는 직업교육훈련과정의 설치
   다. 직업교육훈련의 위탁 실시
6. “원격직업교육훈련”이란 분리된 장소에서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실시되는 직업교육훈련을 말한다.
7. “현장실습”이란 직업교육훈련생이 향후 진로와 관련하여 취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 및 태도를 습득할 수 있도록 직업현장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과정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 6. 7.]

제3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행정상 · 재정상의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시설 · 설비의 확충 및 실험실습의 실시
2. 경제적 ·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사람에 대한 직업교육훈련의 실시
3. 직업교육훈련교원의 양성 및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
4. 법인으로 전환한 직업교육훈련기관
5. 산업체가 실시하는 현장실습
6. 산학협동의 실시
7. 원격직업교육훈련체제의 구축
8. 직업교육훈련생의 수강료 등 직업교육훈련 비용 부담

[전문개정 2011. 6. 7.]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시행 2021. 3. 23.] [법률 제17954호, 2021. 3. 23., 타법개정]

제90조(특수목적고등학교) ①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중에서 특수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이하 “특수목적고등학교”라 한다)를 지정 · 고시할 수 있다. 다만, 제10호의 학교 중 국립의 고등학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 · 고시한다. <개정 2001. 1. 29., 2001. 3. 2., 2007. 5. 16., 2010. 6. 29., 2013. 3. 23., 2020. 2. 28.>

1. 삭제 <2010. 6. 29.>
2. 삭제 <2010. 6. 29.>
3. 삭제 <2010. 6. 29.>
4. 삭제 <2010. 6. 29.>
5. 과학 인재 양성을 위한 과학계열의 고등학교
6. 삭제 <2020. 2. 28.>
7. 예술인 양성을 위한 예술계열의 고등학교와 체육인 양성을 위한 체육계열의 고등학교
8. 삭제 <2010. 6. 29.>

9. 삭제 <2010. 6. 29.>
10.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이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라 한다)

② 특수목적고등학교로 지정받으려는 법인 또는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29., 2013. 3. 23., 2013. 10. 30.>

1. 학교운영에 관한 계획
2.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계획(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는 산학연계에 관한 계획을 포함한다)
3. 학과를 두려는 학교의 경우 학과 설치에 관한 계획
4. 입학전형 실시에 관한 계획
5. 교원배치에 관한 계획

5의2. 교장 공모에 관한 계획(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만 해당한다)

6. 그 밖에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운영 등에 관하여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교육감이 제1항제5호 및 제10호(공립·사립의 고등학교만 해당한다)의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지정·고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07. 5. 16., 2008. 2. 29., 2010. 6. 29., 2013. 3. 23., 2014. 12. 9., 2020. 2. 28.>

④ 교육감은 특수목적고등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국립학교인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4. 2. 18., 2020. 2. 2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를 집행한 경우
2. 부정한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한 경우
3. 교육과정을 부당하게 운영하는 등 지정 목적을 위반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지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사유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학교의 신청이 있는 경우

5. 교육감이 5년마다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교(제1항제6호의 특수목적고등학교는 제외한다)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하여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교육감이 제1항제5호 및 제10호(공립·사립의 고등학교만 해당한다)의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1. 6. 7., 2013. 3. 23., 2014. 12. 9., 2020. 2. 28.>

⑥ 교육부장관은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또는 지정 취소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105조의3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 등 지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4. 12. 9.>

⑦ 교육감은 제4항 본문에 따라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해당 학교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 취소 당시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해서는 해당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당초 계획된 교육과정이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학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국립학교인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학교의 장과 협의하여 당초 계획된 교육과정이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4. 2. 18., 2014. 12. 9.>

⑧ 교육감이 지정하는 특수목적고등학교의 학급 수, 학생 수 및 시설기준 등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기준은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0. 6. 29., 2011. 6. 7., 2014. 2. 18., 2014. 12. 9.>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지정 취소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 6. 29., 2011. 6. 7., 2013. 3. 23., 2014. 2. 18., 2014. 12. 9.>

[대통령령 제30494호(2020. 2. 28.)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4항제5호의 개정규정 중 같은 조 제1항제6호의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제외하는 부분은 2025년 2월 28일까지 유효함]

제91조(특성화고등학교) ①교육감은 소질과 적성 및 능력이 유사한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또는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이하 “특성화고등학교”라 한다)를 지정·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1. 1. 29., 2001. 10. 20.>

② 특성화고등학교 지정 신청서의 제출, 교육감의 해당 학교 평가에 따른 지정 취소에 관하여는 제90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제5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특수목적고등학교”는 “특성화고등학교”로 본다. <개정 2014. 2. 18., 2014. 12. 9.>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성화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0. 6. 29.>

충청북도교육청 취업역량강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예산 지원

2. 비용 발생 요인

○ 직업계고 학생들의 자격증 취득을 위한 지원비

3. 관련조문

제5조(지원대상 및 사업 등) ① 교육감은 제2조1호의 학생에게 취업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취업역량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전공 분야 취업을 위한 자격증 취득 지원
2. 외국어능력시험 지원(영어, 제2외국어 등)
3. 직업기초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지원
4. 그 밖에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교육감은 지원 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거나 다른 기관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차등하여 지원하거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직업계고 학생들의 자격증 취득을 위한 예산지원

나. 추계 결과

1)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자격증 응시료

구분	종목	응시료	비고
전공분야	기능사	약50,000원~100,000원	종목별 상이
어학 관련	토익	48,000원	
	일본어능력시험	45,000원~60,000원	급수별 상이
	HSK시험(중국어)	30,000원~130,000원	급수별 상이

2) 취업역량 강화 지원 예산액 추계

(단위: 억원)

연도별	2022	2023	2024	2025	2026	비고
지원한도	7	7	7.5	7.5	7.5	

3)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대상(2022. 기준)

(단위: 명)

대상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계
직업계고 26교	3,248	3,174	3,390	9,812

다. 재원조달방안: 보통교부금

5.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5년)	계
세 입		700,000	700,000	750,000	750,000	750,000	3,650,000
보통교부금		700,000	700,000	750,000	750,000	750,000	3,650,000
세 출		700,000	700,000	750,000	750,000	750,000	3,650,000
취업역량강화 예산지원		700,000	700,000	750,000	750,000	750,000	3,650,000
재원 조달		700,000	700,000	750,000	750,000	750,000	3,650,000
의존 재원	소 계	700,000	700,000	750,000	750,000	750,000	3,650,000
	국고보조금						
	보통교부금	700,000	700,000	750,000	750,000	750,000	3,650,000
	특별교부금						0
자체 수입	소 계						0
	자체수입						0
지방채							0
기 금							0
기타(차입금, 민자, 예비비 등)							0